

심사규정

제 1조 (명칭)

본 규정은 KSKCS&KCCS 공식학술지인 Journal of Cosmetic Medicine 논문심사규정(이하 "규정"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제 2조 (목적)

규정은 논문심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하여 학회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적용범위)

- ① 규정에 관하여 편집위원회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본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② 논문의 접수,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.

제 4조 (논문의 접수)

- ① 게재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.
- ② 접수된 원고는 논문 체제검사를 거친 후에 원고의 접수일과 접수번호가 부여한다.
- ③ 저작권에 대한 동의서는 KSKCS&KCCS에서 규정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. 또한 이 동의서에는 논문의 제목, 날짜, 모든 저자(들)의 영문이름과 모든 저자들의 친필 서명을 기록해야 하며, 교신 저자명과 교신 저자의 주소, 이메일 주소, 연락처를 기록해야 한다.

제 5조 (심사위원의 선임기준 및 위촉)

- ① 심사위원은 논문 한 편당 2인으로 한다.
- ② 심사위원은 편집위원과 미용성형분야에서 연구업적과 대외활동이 뛰어난 권위 있는 회원 가운데에서 선정한다.
- ③ 편집위원회 위원들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인선된다.
- ④ 심사위원의 위촉은 편집위원장(주) 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며, 위촉된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한다.
- ⑤ 심사위원의 위촉에 있어 심사 대상자가 근무하는 대학이나 병원의 심사위원 및 이해관계가 있을 가능성 있는 심사위원은 피하도록 하며, 외국의 학자도 참여할 수 있다.
- ⑥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이 위촉되면 즉각 본인에게 통보하고 논문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,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6조 (심사위원의 의무)

- ① 심사위원은 최근의 전공학문 동향을 고려하여 학자적 양식과 학문적 판단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논문심사에 임해야 한다.
- ② 심사항목은 체제의 적합성, 내용의 독창성, 논리의 명확성, 학문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.
- ③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정해진 기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, 논문심사서를 투고시스템에 올려야 한다.
- ④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사할 수 없을 투고시스템에 올려야 한다.
- ⑤ 중복게재나 이차게재가 의심된 경우 편집위원회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.
- ⑥ 심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, 편집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여야 한다.

제 7조 (편집위원회의 의무와 권리)

- ① 심사위원의 명단은 투고자에게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.
- ② 심사내용은 저자와 편집위원장 및 관련된 편집위원은 열람 및 확인할 수 있으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일체 공표하지 아니한다.
- ③ 심사위원의 논문심사서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저자에게 발송해야 한다.
-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의 모든 절차와 과정, 결과를 투고시스템에 남겨야 한다.

제 8조 (논문의 채택)

-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2인의 심사를 거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- ② 심사결과는 ㉠ ACCEPT, ㉡ MINOR REVISION, ㉢ MAJOR REVISION, ㉣ REJECT 4종으로 구분한다.
- ③ 2명 모두 "REJECT"로 판정한 논문은 채택되지 않는다. 심사위원 1인이 "REJECT"에 해당되는 경우는 편집위원장이나 제3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른다.
- ④ "ACCEPT"으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없이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이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이 확인 되거나, 체제상 교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.
- ⑤ "MINOR REVISION 또는 MAJOR REVISION"으로 판정된 경우 교신저자는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교정한 원고를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 올려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.
- ⑥ "MINOR REVISION 또는 MAJOR REVISION"일 경우 다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를 재의뢰한다.
- ⑦ 기타 필요시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편집위원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.

제 9조 (게재 불가능)

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한 항에 해당된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"REJECT"으로 판정하고,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
- ① 원고 전체나 원고의 중요한 부분, 표, 그림 등이 다른 학술지와 기타 정기 편집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
- ② 심사위원 2인 모두 REJECT으로 심사되었을 때
- ③ 학회지의 발간목적과 영역에서 벗어난 경우
- ④ 투고규정의 논문을 심사하는 내용, 즉 윤리성, 독창성, 논리의 명확성과 학술적 의의 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
- ⑤ 기타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
제10조 (소위원회)

논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시적으로 전문분야별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편집위원장, 간사는 소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.

제11조 (비밀의 유지)

심사한 내용 중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절대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.

제12조 (이의제기)

- ① 심사위원의 심사의견, 수정요구 및 재심 이유에 대한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또는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 때 상항단 논거나 실증 사례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야 하며, 익명으로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의 의견교환을 증재할 수 있다. 계속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,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.
- ③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 (수정기간) 수정기간은 심사결과 통보일을 기준으로 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. 6개월을 초과할 경우 논문철회로 간주되며, 저자의 요청에 따라 재투고할 경우 최초투고로 처리된다.

부칙

(시행일) KSKCS&KCCS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